

# · 대기배출시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

## 1 대기환경보전법

점검사항 및 주요 확인사항		법 조항	처분내용(1차 기준)
<b>대기배출시설 인허가</b>			
1	<b>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여부 확인</b> -업종 및 시설분류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여부 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기오염배출시설 - 법 제2조제11호 - 시행규칙 제5조 [별표 3]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무허가(변경허가 포함),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- 설치 가능 지역: 사용중지 및 고발 - 설치 불가능 지역: 폐쇄명령 및 고발</li> <li>변경신고 미이행 - 경고 및 과태료 60만원</li> </ul>
2	<b>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</b> -대상: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등 ※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허가 - 법 제23조 - 시행령 제11조제1항</li> </ul>	
3	<b>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신고</b> -대상: 허가 대상 외의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특정대기유해물질 - 법 제2조제9호 - 시행규칙 제4조 [별표 2]</li> <li>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- 시행규칙 제24조의2 [별표 8의2]</li> </ul>	
4	<b>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변경 허가·신고</b> -변경허가 ·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이상 증설하는 경우 ※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100분의 30이상 ·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-변경 전 신고 · 배출(방지)시설 증설·교체·폐쇄, 원료·연료의 변경, 그 외 허가 신고 사항 및 일일조업시간 변경 -변경 후 신고 ·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, 배출(방지)시설 임대(30일 이내), 대표자·사업장명 변경(2개월 이내)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고 - 법 제23조 - 시행령 제11조제2항</li> <li>변경허가 - 법 제23조제2항 - 시행령 제11조제4항</li> <li>변경신고 -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 - 시행규칙 제27조</li> </ul>	
5	<b>대기오염물질배출·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</b> -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·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가동개시 신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동개시: 법 제30조</li> <li>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: 시행령 제15조</li> </ul>	
<b>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</b>			
6	<b>자가측정</b> -자가측정 기록·보존 · 1~3종(전산) / 4~5종(운영기록부 또는 전산) ·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 6개월간 보존 -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· 상반기 측정: 7월 31일까지 · 하반기 측정: 다음해 1월31일까지 ※ 전산 기록·보존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-측정공 적정 설치(최소 하부직경의 2배, 상부직경의 1/2배 범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가측정 - 법 제39조, 시행규칙 제52조제3항</li> <li>자가측정 주기 - 시행규칙 제52조제5항 [별표 11]</li> <li>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기록 보존 - 시행규칙 제36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가측정 미 실시: 경고 및 고발</li> <li>측정결과 거짓 기록: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</li> <li>측정대행업자에게 거짓 측정결과 작성하게 하는 행위: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</li> <li>측정대행업자에게 결과 누락, 측정 방해하는 행위: 경고 및 고발</li> <li>측정결과 미제출: 과태료 100만원</li> <li>방지시설 미가동, 공기 희석 배출, 비정상 가동으로 배출 허용기준 초과: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</li> <li>공기조절장치 및 가지배출관 설치: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</li> <li>부식·마모로 오염물질 누출 배출(방지)시설 방지: 경고 및 과태료 200만원</li> <li>방지시설에 딸린 기계·기구류 부식·마모·고장·훼손 등 방지: 경고 및 과태료 200만원</li> <li>측정기기 미부착: 경고 및 고발</li> <li>측정기기 고의로 미작동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안될 경우: 경고 및 고발</li> <li>측정기기 고의 훼손: 경고 및 고발</li> <li>측정기기 조작하여 측정결과와 빠뜨리거나 거짓 결과 작성: 경고 또는 조업정지 90일, 고발</li> <li>측정기기 부식·마모·고장 또는 훼손으로 미작동 기기 방지: 경고 및 과태료 200만원</li> <li>측정기기 운영·관리기준 미준수: 경고 및 과태료 200만원</li> </ul>
7	<b>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</b> -방지시설 정상 운영(소모품 교체, 약품 투입 등) -금지행위 ·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미가동, 공기희석 공기조절장치 및 가지배출관 설치 ·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 부식·마모·고장·훼손 등 방지 ·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- 법 제31조</li> <li>측정기기 부착 - 법 제32조 시행령 제17조</li> <li>측정기기 부착대상 및 방법 - 시행령 [별표 2] (적산전력계) - 시행령 [별표 3] (굴뚝 자동측정기기) - 시행령 [별표 3의2] (사물인터넷 측정기기)</li> <li>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- 시행령 제17조제6항, - 시행규칙 제37조의3 [별표 9의2]</li> <li>측정기기 운영·관리 기준 - 시행규칙 제37조 [별표 9]</li> </ul>	
8	<b>측정기기 부착·운영</b> - 적산전력계, 굴뚝 자동측정기기, 사물인터넷 측정기기* 설치 의무 * 부착대상: 대기배출사업장 4종, 5종 -측정기기 정상 가동여부 확인 금지행위 · 측정기기 부식·마모·고장·훼손 등 방지 고의 훼손, 측정결과 누락 및 거짓 작성 등		
9	<b>운영일지 작성</b> -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매일 기록 · 1~3종: 전산 기록 및 보존 · 4~5종: 운영기록부 최종 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법 제31조제2항 시행규칙 제36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운영기록 거짓 기재나 보존·비치하지 않은 경우: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</li> </ul>
<b>환경기술인</b>			
10	<b>환경기술인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, 준수사항</b> -임명기간: 최초 배출시설 설치 시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, 변경 임명은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-준수사항: 배출허용기준 준수, 운영기록 사실에 기초 작성, 자가측정 정확히 하고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 및 여과지 관리 등 <b>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여부</b> -신규교육: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-보수교육: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법 제40조, 시행령 제39조</li> <li>자격기준 - 시행령 제39조제2항 [별표 10]</li> <li>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- 시행규칙 제54조 - 법 제77조제1항 시행규칙 제125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미선임: 선임명령 및 과태료 300만원</li> <li>자격기준 미달: 변경명령</li> <li>준수사항 등 미이행: 경고 및 과태료 60만원</li> <li>교육 미수료: 과태료 60만원</li> </ul>

### 참고 위 체크리스트 내용은 2025. 9월 법령 기준으로 제작

-최신 법령 조회 방법: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(<http://www.law.go.kr>)에서 1. “대기환경보전법”, “대기관리권역법”, “환경오염시설법” 검색

☞ 최신 법령을 조회하여 각 규정의 세부내용 확인 및 이행 필요

※ 배출사업장에서 2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적발 시 가중처분 받게됨

# 대기배출시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

## 【총량관리사업장 허가】

11	<b>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</b> - 대상: 대기관리권역(청원, 진주, 김해, 양산, 고성, 하동) 내 대기 1~3종 사업장 중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먼지 0.2톤/년, 질소산화물 4톤/년, 황산화물 4톤/년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 * 먼지는 발전시설, 보일러, 폐수-폐기물 소각시설,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한함 - 시기: 신규사업장 해당 사유 발생 시, 기존사업장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(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신청서는 경상남도청으로 제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허가 -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제1항</li> <li>■ 허가 배출량 기준 -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령 제20조 [별표 2]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무허가(변경허가 포함) 사업장 - 7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- 사업장 폐쇄명령</li> </ul>
----	--	---	--

## 【환경오염배출시설 통합허가】

12	<b>배출시설 통합허가</b> - 대상: 대기 1·2종 또는 수질 1·2종 사업장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 - 시기: 신규사업장) 사업장 설치 전, 기존사업장) 3종이하 사업장이 2종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중 규모변경 이전 (통합허가 신청서는 환경부로 제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허가 -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</li> <li>■ 통합허가 대상 업종 -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조 [별표 1]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무허가(변경허가 포함) 사업장 -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- 설치 가능 지역: 사용중지 - 설치 불가능 지역: 폐쇄명령</li> </ul>
----	--	---	--

## 2 체크리스트

점검사항	점검결과	
	예	아니오
<b>1. 배출시설 설치허가(신고)사항</b>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배출시설 허가증(신고증명서)의 내용과 실제 설치 사항이 다른 것이 없는가(변경허가, 변경신고)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새로운 배출시설 설치,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증설/교체/폐쇄</li> <li>■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, 사용하는 원료 및 원료 변경</li> <li>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</li> <li>■ 기타 사항 변경(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, 대표자, 허가 사항, 일일조업시간 등 기재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)</li> </ul>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배출시설 허가증(신고증명서)의 내용과 실제 설치 사항이 다른 것이 없는가(변경허가, 변경신고)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가동개시 신고 후 조업을 하고 있는가		
<b>2. 대기배출시설 운영 관리</b>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제조공정 확인 사항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배출시설 설치허가(신고) 서류 등에 의한 공정흐름도, 원료사용량 등 제조공정 확인</li> <li>■ 단위시설의 Vent, Safety Valve 등 관리 상태</li> </ul>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정상 운영 여부 확인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부식, 마모 등에 의한 오염물질 누출 여부</li> <li>■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는 오염물질 배출장치 설치 여부 ※ 공기조절장치(덤펀), 가제배출관(바이패스 덕트) 등</li> <li>■ 가동 중지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(원인, 가동 등)</li> </ul>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보일러, 기타 사항 확인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점화용 보조 연료(가스, 경유 등) 사용 여부</li> <li>■ 지역 연료 사용 기준 준수 여부(저황유 사용 여부)</li> <li>■ 연료물질(연료 등)의 종류 및 적정량 투입 여부</li> <li>■ 고체 연료 사용승인 확인, 악취발생물질 무단 소각 여부</li> </ul>		
<b>3.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관리</b>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설치 여부 확인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방지시설 설치 여부 확인(방지시설 설치면제 시설제외)</li> <li>■ 허가(신고)시 설계된 도면(규모, 용량, 위치 등)과 일치 여부 ※ 공기조절장치(덤펀), 가제배출관(바이패스 덕트) 등</li> </ul>		

점검사항	점검결과	
	예	아니오
<b>3.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관리</b>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정상 운영 여부 확인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방지시설 가동 여부</li> <li>■ 부대 기계, 기구류(계량기, 차압계, 각종 모터 등)의 작동·고장·훼손 여부</li> <li>■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배출량과 방지시설 처리 능력 비교</li> <li>■ 악품 적정량 및 소모품 정기 교체(여과필터, 활성탄 등) 여부</li> <li>■ 주기적 점검 실시 여부</li> <li>■ 가동 및 고장 수리에 관한 방지시설 운영일지 등 관계 서류</li> </ul>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오염물질 배출상태 확인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1차 육안으로 매연 및 먼지 배출상태</li> <li>■ 측정공의 위치 및 측정대 적정 설치 여부</li> <li>■ 자가측정 주기에 맞게 이행 여부 (방지시설 설치 면제 시설 포함) ※ 자가측정 대상 항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참고</li> <li>■ 총 배출구 수/시료 채취 배출구 수 확인</li> </ul>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측정기기 정상 가동 여부 확인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적산전력계, 유량계, 굴뚝 자동측정기기,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고장방지 여부 등</li> </ul>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운영일지 기록·보존 여부 확인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운영기록부 매일 작성 및 결재권자 결재 여부</li> <li>■ 법정 서식에 맞게 기록 및 보존 여부</li> </ul>		
<b>4. 환경기술인 근무상태 확인</b>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환경기술인의 종별 자격 기준 적정 여부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환경기술인 선임 및 자격기준(자격증) 확인 서류 비치</li> </ul>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여부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신규교육: 임명(선임)일로부터 1년 이내 1회</li> <li>■ 보수교육: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실시 ※ 교육 수료증 비치</li> </ul>		

체크합니다!  
조치 필요사항

- 
- 
- 
- 

